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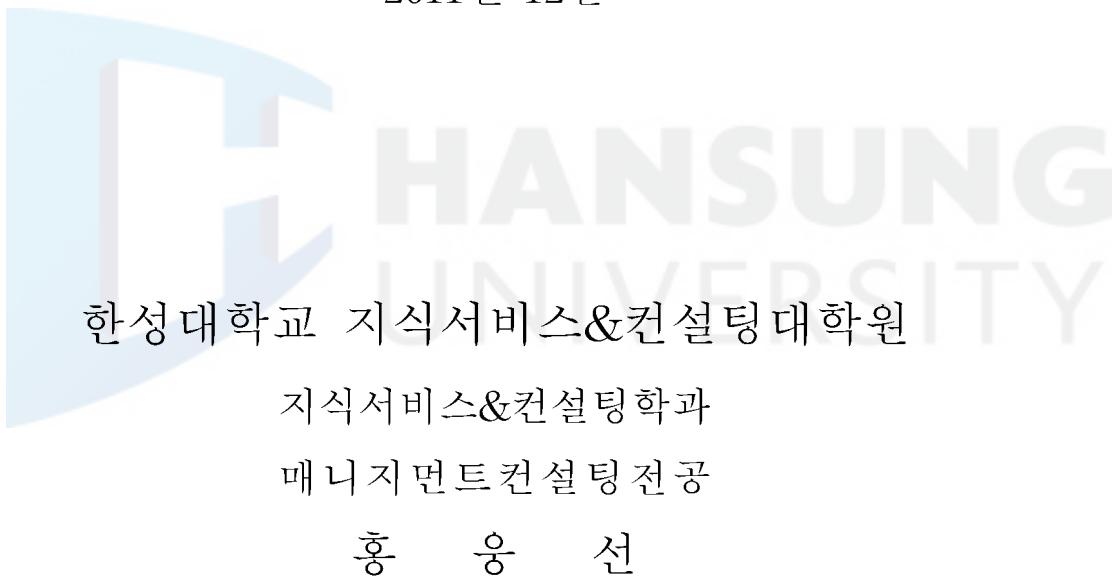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의
인지도와 활용도에 대한 연구

2011년 12월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매니지먼트컨설팅전공

홍 응 선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나도성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의
인지도와 활용도에 대한 연구

The Study on the Awareness and the Utilization of
Tax Incentives for SMEs

2011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매니지먼트컨설팅전공

홍웅선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나도성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의
인지도와 활용도에 대한 연구

The Study on the Awareness and the Utilization of

Tax Incentives for SMEs

위 논문을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매니지먼트컨설팅전공

홍웅선

홍웅선의 컨설팅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1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국 문 초 록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의 인지도와 활용도에 대한 연구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매니저컨설팅전공
홍 응 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체수는 총 304만개 그 점유 비는 99.9%이고 종사자수는 11,500천 명으로 총 종사자수의 88%를 점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생산과정과 경영 시스템 혁신 역량의 취약성 산업 구조측면의 범위와 글로벌화가 미흡하고 시장의 불공정성으로 시장경쟁에서의 영세성과 구조적 제약, 기업가 정신의 부재 등으로 기초체력이 취약한 실정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우리나라의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의 원동력이며 소득의 효율적 배분과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고용창출의 주역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창업가정신 확산으로 창업촉진하고 편리하게 사업할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으로 산업구조의 생명력과 활력을 불어 넣어 신산업창출과 기술 역량을 강화하며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기술과 인력공급, R&D등에 직접 지원하여 투자를 확대하고 조세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고 있다.

현행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는, 중소기업특례 연구인력 개발특례, 투자촉진특례, 고용 지원을 위한특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기타 조세지원제도 등, 그 기능이 다양하고 내용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이 한정되고 빈번한 세법 개정과 이해부족으로 그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업의 규모에 따른 조세지원제도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기업의 형태, 기업의 주요업종 기업의 수입금액 기업의 계속 연수에 따라 조세지원제도의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의 형태, 기업의 주요업종 기업의 매출액, 기업의 계속 연수에 따른 조세지원

제도의 활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가설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의 형태와 기업의 수입금액은 조세지원제도의 인지도에 영향을 주었으며 또한 기업의 형태와 기업의 수입금액은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에 영향력이 있음이 검증되었고 기업의 주요 업종과 기업의 계속연수는 조세지원제도의 인지도와 활용도에 영향이 없음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기업의 형태, 기업의 수입금액에 따라 그 인지도와 활용도가 다르므로 조세지원제도의 감면 대상과 감면의 폭을 확대 개선하고 중소기업 지원체제의 조세지원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세율인하와 인지도 활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홍보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목 차

제 1 장 서 론	1
-----------------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
1. 연구 방법	1
2. 연구의 구성	2

제 2 장 중소기업의 조세 지원제도	3
---------------------------	---

제 1 절 중소기업의 범위	3
1.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	3
2. 조세 특례 제한 법상의 중소기업	4
3. 중소기업의 역할	6
제 2 절 중소기업 조세 지원제도의 유형	8
1. 직접지원제도	8
2. 간접지원제도	10
제 3 절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	11
1.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특례제도	11
2.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5
3.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16
4.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20
5.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조세지원	22
6. 조세특례의 제한	24
제 4 절 조세지원제도의 선행연구	27

제 3 장 연구가설 및 연구 모형 30

제 1 절 연구모형	30
제 2 절 연구가설	31
제 3 절 독립변수와 설문지 구성	32
1. 중소기업 조세 특례 제도	33
2. 연구 인력 개발 조세 지원 제도	34
3. 투자촉진 조세지원 제도	35
4. 기업 구조 조정과 지역 이전 촉진을 위한 조세제도	36
제 4 절 종속 변수와 설문지 구성	37
제 5 절 설문지의 구성과 신뢰도 분석결과	37
제 6 절 설문조사 통계 분석	39

제 4 장 연구결과 40

제 1 절 조사기업의 일반적인 현황	40
제 2 절 기업의 형태와 인지도와의 관계	41
제 3 절 기업의 주요업종과 인지도와의 관계	43
제 4 절 기업의 수입금액과 인지도와의 관계	45
제 5 절 기업의 계속연수와 인지도와의 관계	47
제 6 절 기업의 규모와 활용도와의 관계	49
1. 기업의 형태와 활용도와의 관계	49
2. 기업의 주요업종과 활용도와의 관계	50
3. 기업의 수입금액과 활용도와의 관계	51
4. 기업의 계속연수와 활용도와의 관계	52
제 7 절 분석 검증 결과	54

제 5 장 결 론 56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56
제 2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방향	56
【참고문헌】	58
【부 록】	60
ABSTRACT	65



【 표 목 차 】

[표 2-1]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 규모기준	3
[표 2-2] 중소기업 일반현황	8
[표 3-1] 중소기업 조세특례제도에 관한 설문	33
[표 3-2] 연구 인력 개발 조세 지원제도에 관한 설문	34
[표 3-3] 투자 촉진 조세 지원 제도에 관한 설문	35
[표 3-4] 기업구조 조정과 지역이전 촉진을 위한 조세제도에 관한설문	36
[표 3-5] 조세 제도에 관한 활용도	37
[표 3-6] 설문지의 구성과 신뢰도 분석결과	38
[표 4-1] 조사기업의 일반적 현황	41
[표 4-2] 기업의 형태에 따른 기술 통계량	42
[표 4-3] 기업의 형태와 인지도	43
[표 4-4] 기업의 주요업종에 따른 기술통계량	44
[표 4-5] 기업의 주요업종과 인지도	45
[표 4-6] 기업의 수입금액에 따른 기술 통계량	46
[표 4-7] 기업의 수입금액과 인지도	47
[표 4-8] 기업의 계속연수에 따른 기술통계량	48
[표 4-9] 기업의 계속연수와 인지도	49
[표 4-10] 기업의 형태에 따른 기술 통계량-활용도	50
[표 4-11] 기업의 형태와 활용도와의 관계	50
[표 4-12] 기업의 수입금액에 따른 기술 통계량	52
[표 4-13] 기업의 수입금액과 활용도와의 관계	52
[표 4-14] 기업의 계속연수에 따른 기술 통계량-활용도	53
[표 4-15] 기업의 계속연수와 활용도와의 관계	53
[표 4-16] 연구 가설 검증 결과	54

【 그 림 목 차 】

<그림 3-1> 연구 모형 30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기업중식의 양적경제성장전략으로 초고속 성장을 이루 하였으나 현재에는 산업과 소득의 양극화, 성장 잠재력저하, 고용 없는 성장 등으로 구조적이 문제가 발생하고 중소기업간 과정경쟁과 생산성 하락으로 수익성과 채산성이 악화되고 대기업과의 불공정거래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성작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육성책으로 중소기업성장을 이루하고 있고, 국민경제의 성장발전 자원과 소득의 효율적 배분 및 고용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육성이 세로이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책으로 금융, 기술 인력 조세지원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그중에도 조세특례 제한법을 중심으로 여러 세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는 세법의 빈번한 개정과 절차의 복잡성으로 활용도가 낮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인지도와 활용 상태를 분석하여 조세지원제도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 연구방법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론적 연구방법과 실증연구방법을 병행하였고 이론적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 선행연구와 중소기업관련 법규 중소기업 조세지원에 관한 관련 문헌, 인터넷 검색자료등을 참고하여 중소기업이 개념 범위 조세지원 제도를 살펴보고 실증적 연구방법으로 중소기업조세지

원제도의 인지도와 활용도를 서울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정한 연구모형과 가설에 따라 기업규모와 조세지원제도의 인지도 및 활용도의 영향을 검증하였다.

2. 연구의 구성

본 연구방법은 총 5장으로 구성되며 각 각장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로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지원제도의 유형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및 조세지원제도의 선행 연구를 검토 하였다

제3장에서는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으로 기업규모와 조세지원제도 인지도 및 활용도의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독립연수와 설문지 구성, 종속변수와 설문지 구성, 설문지의 구성과 신뢰도 분석결과 및 설문조사 통계분석을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연구결과로 조사기업의 일반적 현황, 기업의 형태, 주요업종, 매출액, 준속연수와 인지도 관례 및 기업의 규모와 활용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분석결과를 검증하였다.

제5장에서는 결론으로 연구의 요약및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장 중소기업의 조세 지원제도

제1절 중소기업의 범위

1.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

중소기업이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중소규모의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을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다.

- (1)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2012년부터 적용)
- (2)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 원 이상인 법인
- (3) 자기자본이 5백억 원 이상인 기업
- (4)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 5백억 원 이상인 기업

[표2-1]

단위 천

해당업종	분류번호	규모기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 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N	매출액 300억 원 이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농업, 임업 및 어업	A	
저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업점	I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금융 및 보험업	K	매출액 200억 원 이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R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2) 자산 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3) 간접소유의 경우에는 부칙의 경과조치에 의해 11.12.31까지 중소기업 지
위안정

(4)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관계회사에 대해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
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자산총액, 자기자본을 합산한 결과 업종별 규모기준과
중소기업 상한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4항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협
동조합법이나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기타 법인

2. 조세 특례 제한 법상의 중소기업 · 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음(당
해 법률에서 규정한 시책대상에만 포함)

조세특례 제한법상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광업 등의 중소기업 해당사업
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며(업종기준) 종업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 범위기
준(규모기준)과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업을 의미한다.

1) 업종기준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업종으로서 중소기업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와 2이상의
중소기업 해당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사업 및 중소기업 요건을 적용한다.

2) 규모기준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
업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인 경우에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종업원, 자본금, 매출액 기준 중 한 가지만 충

족해도 중소기업에 해당되므로 자본집약적 초대형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에 포함될 수 있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 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종업원 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며, 단시간 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시행규칙 제2조제2항). 또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 전체의 종업원 수가 주된 사업으로 판정된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종업원 수 이하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본다.

2011년 4월 7일 시행규칙 개정 시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규모 기준 중 상시종업원수 판단 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 1명을 0.5명으로 계산하도록 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7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2) 자본금과 매출액 기준

자기자본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 서상의 매출액을 말하며,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 금액을 말한다.

① 주권 상장법인과 외부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② 상기 ①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말한다.

3) 독립성기준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는 주업종 기준과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이어야 하는 중소기업 기준 외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 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음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천명 이상, 자기 자본이 1천억 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회사일 것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③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외의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 출입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닐 것

3) 중소기업 적용기간의 유예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나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3. 중소기업의 역할

정치경제 사회의 환경에 따라 중소기업의 역할도 다양하게 변화 되었다.

1) 중소기업은 다수의 시장참여자로서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이 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함으로서 시장의 독과점 현상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경쟁을 통해 국민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으로 경제여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며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자극시켜 경제적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소비자 효율을 증대시킨다.

2) 중소기업은 다양화 개성화 전문화 되어가는 현대사회의 소비패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다품종소량생산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고 산업간 균형발전에 이바지 한다.

3)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역할 분담으로 국내경제의 균간을 이루고 국가경제

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토대를 마련한다. 또한 중소기업은 제품의 소비자인 동시에 제품의 생산자이며 대기업 창출의 근간이 된다.

- 4) 중소기업은 새로운 기술을 가진 기업가로 하여금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가치창출과 자아실현의 통로로 우리경제의 산업구조를 혁신적으로 개편하는 근원이 된다.
- 5) 중소기업도 고용 없는 성장의 유일한 대안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취업기회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은 노동집약적이므로 대기업보다 더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낮은 학력과 미숙련 근로자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한다.
- 6) 중소기업은 여성장애인등 소외계층의 사회진출과 자영업자등 경쟁력 취약 계층의 성장을 도모하고 소득 계층 간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며 경제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7) 중소기업은 경기부양 기업 활성화에 신속히 대처하여 사업전환 통폐합등 경기변동 또는 수요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처한다.
- 8) 중소기업은 사회 안정과 지역사회의 상호발전을 유도하여 건전한 사회발전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자 역동적인 기업문화를 사회전반에 확산 시키며 기업 간 협력에 기여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위상은 다음과 같다.



1) 김성진(2006), 「한국의 중소기업」: 매일 경제신문사 P 61-65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사업체수 (개)	전체	2,940,345	2,976,646	3,046,958	3,069,400
	중소기업 (비중,%)	2,936,114 (99.9)	2,974,185 (99.9)	3,044,169 (99.9)	3,066,484 (99.9)
	대기업 (비중,%)	4,231 (0.1)	2,461 (0.1)	2,789 (0.1)	2,916 (0.1)
종사자수 (명)	전체	12,234,160	12,612,692	13,070,424	13,398,497
	중소기업 (비중,%)	10,677,789 (87.3)	11,149,134 (88.4)	11,467,713 (87.7)	11,751,022 (87.7)
	대기업 (비중,%)	1,556,371 (12.7)	1,463,558 (11.6)	1,602,711 (12.3)	1,647,475 (12.3)

2)※ 중소기업 일반현황

[표 2-2]

제2절 중소기업 조세 지원제도의 유형

조세의 지원이란 정부가 정책목표등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이나 개인에게 제공하는 조세 감면형태의 유인으로 이에는 직접지원 제도나 간접지원제도가 있다

1. 직접지원제도

직접지원이란 비과세나 면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또는 경감세율의 적용과 같이 조세의 감면효과가 영구적으로 미치는 세제상의 유인을 말한다. 이러한 형태의 조세지원은 그 방법이 단순할 뿐만 아니라 조세감면의 효과가 직접적이고 또 보조금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조세지원기능에 비하여 재원조달기능이나 세 부담의 공평한 배분기능이 크게 손상되며 조세유인의 유효성도 분명히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1) 비과세

비과세소득이란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특정소득에 대하여 공익상, 정책상 이중과세 배제의 목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과세권

2) 중소기업청 (2011) 「중소기업위상」

을 포기한 소득으로 조세의무의 완전면제이다

2) 세액면제

세액면제란 산업정책이나 특정 정책적 목적에서 일정기간 특정사업에서 발생하는 특정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비과세와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① 법령에서 “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은 비과세 소득이고, “법인세를 면제한다”라고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은 면제소득이다.

② 비과세소득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지만, 면제소득은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금액에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면제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③ 납세의무자가 비과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과세되지 않는 소득이 비과세소득인데 반하여 면제소득은 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면제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각 과세연도에 정상적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일정한 요건과 방법에 따라 특정사업에서 발생한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로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함으로서 총부담세액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이용한 국고보조의 효과가 있다.

4)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정상적으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투자촉진 중소기업 육성등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과 방법에 의하여 투자금액등에 일정율을 계상한 금액을 납부한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5) 경감세율의 적용

이것은 납세의무주체에 관한 것으로 일정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조세를 전적으로 면제 또는 경감한다든지 또는 일정 기간 면제 또는 경감하고 그 이후에 과세하는 제도로 비영리법인의 당기 순이익 과세세율 중소기업의 최저한 세 세율 등이 있다.

2. 간접지원제도

간접지원이란 이론상 일시적으로 조세를 감면하지만 장차 그 감면 분을 회수 할 수 있는 과세 이연방법으로 이 형태의 조세유인은 일정기간 무이자로 납세에 충당되어야 하는 자금을 기업에 대출하여 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으며 국고손실은 그 이자분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또 준비금이나 특별상각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와 같이 특정한 정책목적과 관련시켜 조세유인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세수확보와 공평한 부담배분과 지원기능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간접지원방식은 직접지원방식보다 훨씬 능률적인 정책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1) 준비금제도

준비금제도란 기업의 내부유보를 충실회하여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 목적에 충당하기 위한 비용을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내에 실제로 당해 목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설정된 준비금과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다시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과세의 이연과 같은 효과가 있다.

2) 특별상각제도

특별상각제도는 정상적인 상각에 비하여 상각기간을 단축시키거나 추가상각을 용인하는 제도로 특별상각제도는 정상상각에 비하여 다액의 감가상각공제가 초기연도에 용인되 되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수익에 대한 조세부담의 지급시기를 이연시킴으로써 투자비용의 경감률을 높여 정상상각의 경우보다 투자유인을 강화시킨다. 또한 특별상각은 위험부담과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위험부담이 큰 투자에 대한 유인을 강화한다. 그밖에 특별상각은 자본의 조기회수를 가능케 하여 자금의 이용가능성을 증가시킨다. 특별상각으로 인한 초기의 조세부담경감은 후기의 조세부담증가에 의하여 상쇄되므로 특별 상각이 가져다주는 자금면의 혜택은 일정기간 무이자의 자금을 정부가 융자하여 주는 제도로 투자자본의 조기회수, 투자 초기조세부담, 경감 기업설비 개선의 촉진 등 효과가 있다

3) 이월과세와 이연과세

이월과세는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양도할 때 종전의 취득가액을 신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다.

이연과세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다른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종전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 차익 중 과세이연금액에 해당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두 제도는 모두 과세시기를 늦추어 줌으로 재정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효과가 있다.

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운수업의 경우 차량운반구·선박·어업의 경우 선박포함)

②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③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 3조 제 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설비

제3절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

1.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특례제도

3) 1)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법제5조)

제조업·광업 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내국인이 하는 종업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이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업, 즉, 중소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일정한 금융리스를 제외한 리스에 의한 투자 제외)하는 경우에는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에 대한 소득세에서 당해 투자 금액의 3%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한다.

3) 삼일회계법인(2011) 「삼일총서」 조세특례제한법 §5,002

4) 2)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에 대한 과세특례(법 제5조의 2)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9조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받는 과세연도에 일시상각충당금을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5) 3)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 제6조)

다음에 해당 하는 기업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창업기술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에너지 신기술중소기업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에 대한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사업개시일(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 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기간을 적용한다.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창업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 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②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벤처 기업”) 중 세법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 25조에 따라 2012년 12월 3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4) 삼일회계법인(2011) 「삼일총서」 조세특례제한법 §5(2),001
5) 삼일회계법인(2011) 「삼일총서」 조세특례제한법 §6,005

③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세법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6) 4)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법제7조)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철기(재활용을 포함 함)·원재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는 제외함), 주문자상표부착방식수탁생산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분야 교습학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된 사업인 경우에 한함), 자동차정비업, 선박관리업, 의료업(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제외함), 관광사업(카지노·관광유홍음식점업·외국인전용유홍음식점업은 제외함), 노인복지시설운영업,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6) 삼일회계법인(2011) 「삼일총서」 조세특례제한법 §7,004

구 분		감면율
소 기 업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도매업 등”이라 함)을 경영하는 사업장	10%
	수도권 안에서 도매업 등을 제외한 감면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20%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제외한 감면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30%
중 기 업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5%
	수도권에서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제외한 감면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5%

위의 감면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적용한다.

7) 5)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법제7조의2)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중 환어음 및 판매대금 추심의뢰서로 결재한 금액,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네트워크론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범인세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를 한도로 한다.

7) 삼일회계법인(2011) 「삼일총서」 조세특례제한법 §7(2),004

세액공제액 = ①+②
①[환어음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재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환어음등 지급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금액에 한한다)]×1천분의 5(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론 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의 경우에는 1천분의 4)
②[환어음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 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제1호에서 빼고 남은금액에 한한다)]×1천분의 15

* 단, ②의 금액이 음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조세제도

8) 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법제10조)

(1)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가 설비투자중심으로 치중되어 있는 점을 보완하여 기술개발비용 발생액에 대한 위험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취지의 조세혜택의 하나로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다음 ①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①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원천기술연구개발비×20%(중소기업은 30%)

② 상기 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상기 ①을 선택하지 아니한 연구·인력개발비, 즉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다음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① 총발생액에 의한 세액공제액

ⓐ 중소기업(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 포함)

: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또는ⓑ

ⓑ 중소기업 출업기업(유예기간이 경과한 기업)

: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또는ⓑ

ⓐ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5%

8) 삼일회계법인(2011) 「삼일총서」 - 조세 특례제한법 §10,003

⑥ ⑤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

⑦ ⑧ 및 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Min(6%,3% +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50%)

㉡ 증가발생액에 의한 세액공제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4)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12)	40%
			× (중소기업은 50%)

9)2)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법제11)

특허 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 등을 처음으로 기업화하는 등 신기술을 기업화하는 사업은 항상 고도의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 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국내산업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신기술기업화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과 연구 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투자가 완료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 3) 기술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법제12조)

중소기업이 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제외)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은 제외)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한도)

3.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11) 1)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법제24조)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의한 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의 안정 성장을 위한 기반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정책

9) 삼일회계법인(2011) 「삼일총서」 조세 특례제한법 §11,002

10) 삼일회계법인(2011) 「삼일총서」 조세 특례제한법 §12,002

11) 삼일회계법인(2011) 「삼일총서」 조세특례제 1항 법 § 24,003

지원에 있어서의 기능별 수단으로서 종래의 특정업종별 감면위주의 지원제도를 줄여나가는 대신 우리 산업의 전반에 걸쳐 공통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문은 특정업종에 관계없이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를 완료한 사업연도에 투자 금액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범소정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투자에 대하여는 세액공제가 배제된다.

12) 2) 안전설비투자등에 대한 세액공제(법제25조)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어의 생산성향상에 의한 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의 안정 성장을 위한 기반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정책지원에 있어서 기능별 수단으로서 종래의 특정업종별 감면위주의 지원제도를 줄여나가는 대신 우리 산업의 전반에 걸쳐 공통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문은 특정업종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및 가스안전관리시설, 광산

보안시설, 비상대비자원관리를 위한 보강·확장시설, 위해 요소방지시설, 기술 유출방지설비 및 해외자원개발설비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를 완료한 사업연도에 투자금액의 3%를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은 제외)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3) 3)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법제25조의2)

내국인이 에너지절약시설(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절수설비·절수기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중질유 재처리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2) 삼일회계법인(2011) 「삼일총서」 조세 특례제한법 § 25,002

13) 삼일회계법인(2011) 「삼일총서」 조세 특례제한법 § 25(2),002

14) 4)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법 제25조의3)

내국인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와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5) 5) 의약품질관리개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법 제25조의4)

내국인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16) 6) 고용증대세액공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투자세액공제혜택을 받는 대신 고용창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용창출 인원에 따라 투자세액공제혜택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며,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구조 조정을 통한 지속적인 안정 성장을 이루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투자유인장치로서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재정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 재활용을 포함함)·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함),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함),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국제회의기획업, 전문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 밀접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의 1%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 분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

14) 삼일회계법인(2011) 「삼일총서」 조세 특례제한법 § 25(3),001

15) 삼일회계법인(2011) 「삼일총서」 조세 특례제한법 § 25,(4)001

16) 삼일회계법인(2011) 「삼일총서」 조세 특례제한법 § 26,003

4%(수도권 밖의 투자 및 중소기업의 수도권과 밀접한 지역에 있는 투자는 5%)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를 동시에 적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내국인이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성공업 지구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본 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용창출세액공제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서 청년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1천 만 원 + 청년근로자수 × 1천 500만 원

7)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법 제94조)

근로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업이 무주택종업원에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또는 영유아보육업에 의한 직장어린이집, 근로장애인의 편의시설 및 종업원용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저렴한 임대주택공급을 통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종업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근로자 및 근로장애인의 근무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제상의 지원제도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구입한 경우, 종업원을 위하여 기숙사를 신축 또는 구입한 경우, 또는 영유아보육업에 의한 직장어린이집을 신축 또는 구입한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과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을 신축 또는 구입한 경우 및 종업원용 휴게실 또는 체력단련 실을 신축 또는 구입한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취득금액의 7%(무주택종업원임대주택 또는 종업원용 기숙사의 시설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과 직장어린이집의 시설을 취득한 경우에는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설비를 신축 또는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은 제외)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4.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17) 1)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법제30조의 6)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하는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시점에는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한 부모의 사망 시에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여 과세한다. 이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식 등은 증여세 과세가액 30억 원을 한도로 한다.

18) 2) 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법제31조)

본 조는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를 통한 경영합리화 등을 유도할 목적으로 중소기업간의 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다.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통합에의하여 새로이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사업용 고정자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이월과세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①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②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그러나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과점주주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7) 삼일회계법인(201) 「삼일총서」 조세특례제한법 § 30(6),002
18) 삼일회계법인(201) 「삼일총서」 조세특례제한법 § 31,003

19) 3)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법 제32조)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거나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인 사업 양도 · 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 · 양수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 세 규정을 적용한다.

20) 4) 사업전환 무역 조정지원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법 제33조)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영위하던 사업을 법 제6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당해 전환전사업에 직접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하“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1) 5) 사업전환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법 제 33조의 2항)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영위하던 사업(이하“전환전사업”이라 함)을 2012년 12월 31일(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무역조정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 포함)에서 법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전환사업”이라 함)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전환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전환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

19) 삼일회계법인(201) 「삼일총서」 조세특례제한법 § 32,002

20) 삼일회계법인(201) 「삼일총서」 조세특례제한법 § 33,002

21) 삼일회계법인(201) 「삼일총서」 조세특례제한법 § 33(2),003

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2) 6) 기업의 금융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법제34조)

기업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 조건의 경우에는 각 회의 부불금을 받은 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함)부터 일정기한 내에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재무구조 개선계획(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승인한 것에 한함)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함)에 대하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거주자: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3과세연도의 기간 중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당 세액은 그 다음 3과세연도의 기간 중 균등액 이상을 납부하는 방법

② 내국법인: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 중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5.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23) 1)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법제60조)

법 제60조에서는 대도시공장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불산입 할 수 있고 익금불산입된 금액은 양도일이 소가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22) 삼일회계법인(201) 「삼일총서」 조세특례제한법 § 34,003

23) 삼일회계법인 (2011) 「삼일총서」 조세특례제한법 § 60,002

$$\frac{\text{익금불산입 가능금}}{\text{액}} = \frac{(\text{양도차익-이월결손금})}{\times} \frac{\text{공장이전비용 및 자산취득액 등}}{\text{양도가액}}$$

위 산식에서 양도가액분의 이전비용 및 자산취득액의 비율은 100분의 100을 한도한다.

24) 2) 지방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법제63조)

본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산업시설 및 기업활동의 집중을 억제하고,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함과 아울러 지방산업의 경영여건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강된 세제지원제도의 하나로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①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부터 6년(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 1항 제2호의 성장관리역, 같은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시행령 별표 9에 따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②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시행령 별표 9에 따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 소득세 법인세 50%에 상당하는 세액

25) 3)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법인세액의 감면등(법제63 조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2014년

24) 삼일회계법인 (2011) 「삼일총서」 조세특례한법 § 63,002

25) 삼일회계법인 (2011) 「삼일총서」 조세특례한법 § 63(2),004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7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시행령 별표 9에 따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5년)간은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시행령 별표 9에 따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간은 50%를 감면한다.

26) 4)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법제64조)

2012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제50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지역 안에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개발촉진지구 중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 행자로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에게는 당해 입주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준하는 조세특례가 주어진다.

6. 조세 특례의 제한

27)1) 중복지원의 배제(법 127조)

동일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외국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내국인에 있어서 본 조에 따른 투자세액공제액 계산시 내국인투자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하며 내국인이 도일한 과세연도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와 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는 조세의 확보는 물론 과다한 세액 등 감면과 더불어 조세공평부담의 원칙을 해칠 가능성을 내포하게 되므로

① 투자세액공제의

②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제한

26) 삼일회계법인(2011) 「삼일총서」 조세특례제한법 § 64,002

27) 삼일회계법인(2011) 「삼일총서」 조세특례제한법 § 127,002

③ 동일과세연도에 법에 의한 세액감면과 투제세액공제의 중복적용배제

④ 동일사업장 · 동일가세연도에 대한 법에 의한 세액감면이 중복적용배제

⑤ 동일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⑥ 동일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⑦ 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과 과세특례의 중복적용배제

⑧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중복적용 배제

28) 2) 추계과세시 감면배제(법 128호)

소득세법 제 80조 제 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 66조 제 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추계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본조에서 규정하는 투자세액공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나 거주자가 투자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추계시에도 다음의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법 제5조)

② 공용 창출(임시)투자세액공제 (법 제26조)

29)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법 13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산업시설 및 기업 활동의 집중을 억제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함과 아울러 지방산업의 경영여건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강한 조세지원제도의 하나로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함)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디지털방송장비와 정보통신장비제외)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0) 4) 최저한세 적용 (법 132조)

최저한세제도(Minimum Tax)란 조세정책 목적상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

28) 삼일회계법인(2011) 「삼일총서」 조세특례제한법 § 128,002

29) 삼일회계법인(2011) 「삼일총서」 조세특례제한법 § 130,002

30) 삼일회계법인(2011) 「삼일총서」 조세특례제한법 § 132,003

라도 세부담의 형평성, 국민개념, 재정확보의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로

(1) 법인의 최저한세 = Max(①,②)

① 각종 감면 전의 과세표준 × 14%(과세표준 100억 초과 1천억 원이하 부분은 11%, 100억 원 이하 부분은 10%,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은 7%^(*))

② 각종 감면 후의 산출세액

(*)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부터 3년간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9% 적용

(2) 개인의 최저한 세 = Max(①,②)

① 각종 감면 전의 산출세액 × 35%

② 각종 감면 후의 산출세액

31)5) 구분경리 (법 143조)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면, 이하 “감면대상사업”이라 함)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법 제113조 및 소득세 법 제 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 또는 수입별로 수입과 비용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32)6)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법 144조)

세액공제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법 제26조 제1항 단서를 적용받아 공제 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한 금액 포함)을 포함함]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기간까지의 각 과세연도에 이월 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한 금액 포함)에 대하여는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31) 삼일회계법인(2011) 「삼일총서」 조세특례제한법 § 143,002

32) 삼일회계법인(2011) 「삼일총서」 조세특례제한법 § 144,002

7) 감면세액의 납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자산을 처분 임대한 경우에는 처분임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다.

제4절 조세지원제도의 선행연구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선행연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문헌연구로 정재영(2003), 김성태(2003), 김동수(2003), 김용기(2003), 이은하(2004), 김선주(2005), 이성호(2005), 박중근(2005), 이동호(2006), 김진훈(2005) 임성호(2010)등의 연구가 있으며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방법을 병행한 연구로는 김은영(2005), 이향구(2007), 정순희(2008), 박현구(2008)등의 연구가 있다

정재영(2003)은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에서 D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효세율차이를 검증하고 업종별로 유효세율차이를 검증하였고,

김성태(2003)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연구에서 중소기업의 규모 특히 기업형태와 종업원 수 및 매출액을 규모로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를 연구 분석하였고,

김동수(2003)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에서 투자촉진지원 창업벤처 기업지원 기술인력개발지원 산업구조 조정지원 협동화 공동화 지원, 설비개발 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안 제안하고 운영상 절차의 간소화지도 홍보의 강화, 지속적이고 책임있는 정책 촉진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고

김용기(2003)는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연구에서 중소기업조세지원 내용의 복잡성과 실효성, 활용도 등을 분석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조세지원의 실시를 위한 개선방향 을 제시하였고,

이은하(2004)는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서 조세지원제

도 중에서 세액공제제도와 세액 감면제도의 유효성을 검증하였고

김선주(2005)는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연구에서 중소기업조세지원활용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의 합리적 정비, 지원대상의 확대 실효성의 확보등 개선 방법 등을 제시하였고,

이성호(2005)는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연구에서 중소기업정책은 각 부분별 구조조정을 통해 중소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규제완화와 침례 각종분합지원 관련의 개선을 통해 정책과 제도를 수납 집행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이동호(2006)와 김진호(2008)는 중소기업조세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연구에서 조세지원 대상의 한계, 지원체제의 독립, 지원정보제공의 부족 등으로 활용실적이 저조하므로 효율성과 실효성이 높은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고,

임성균(2010) 현행조세지원제도의 순기능력 역할에 대한 연구에서 동일한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순기능력역할의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 유효성과 투자 관련성 기업가치 관련성을 연구하여 그 결과에 의한 향후 조세지원의 주요대상과 지원 내용을 결정하는데 방향을 제시하였다.

문현연구와 설문조사방법을 병행한 연구로

김은영(2005)을 우리나라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강원도 영서지방을 중심으로에서 빈번한 세법개정과 이해부족으로 세무상 애로가 있었고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제도는 비교적 적절히 활용하나 그 인지도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설문 조사되어 제도측면의 개선방안으로 먼저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확대, 그리고 조세지원제도의 단순화,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요건의 완화, 최저한세적용의 폐지, 중복지원의 배제 완화, 조세지원제도의 일몰시한 연장, 세무행정의 간소화,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 세무신고에 대한 전산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을 제시하였다.

이향구(2007)는 현행중소기업조세지원 제도에 관한 선호도 분석에서 기업의 규모자체가 조세지원제도의 선호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연구 분석하고, 중소기업을 규모, 특히 기업형태와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로 집단을 분류했을 때 조세지원제도의 복잡성을 이유로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

지 않는 정도가 소기업 및 중기업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연구 분석하였고

정순희(2008)는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 상태에 관한 연구에서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를 비교분석 설문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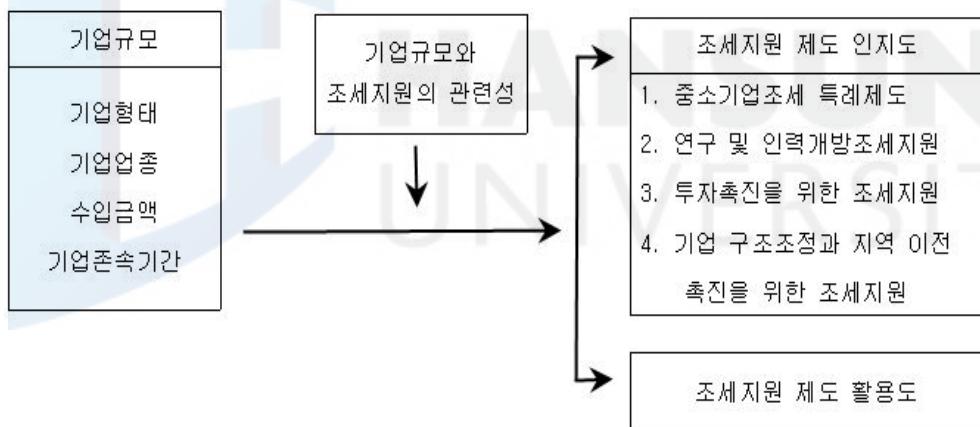
박현구(2008)는 중소기업 조세지원정책과 인지도 측정 및 제도개선방향 연구에서 설문조사방법에 의한 실용적 분석을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조세지원 정책을 조세지원 요건의 복합 다양한 제한 및 규정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접근하기 어려우므로 지원체제 요건을 완화하고 통폐합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제3장 연구가설 및 연구 모형

제1절 연구 모형

본 연구는 기업의 규모에 따른 조세지원 제도에 관한 관련성에 관해 살펴볼 것이다. 현재 시행 되고 있는 조세지원제도를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이 있음이 확인 되었다. 본 연구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조세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설문조사에 따른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의 인지도와 활용도의 연구모형과 가설 설정은 없었으며 비슷한 예로 이향구(2007) '현행주소기업조세지원 제도에 대한 선호도 분석' (인하대학교 박사논문)에서 기업규모와 조세지원 제도의 복잡성이 조세지원제도의 선호도와 경영활동기여도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따른 연구의 개념적 틀을 토대로 현장에서의 컨설팅경험과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3-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기업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기업의 형태, 주요업종, 수입금액 그리고 계속기간을 독립변수로 하여 조세제도에 관한 인지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중소기업조세 특례제도, 연구 및 인력개발 조세지원제도,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과 지역 이전 촉진을 위한 조세제도와의 관련성과 더불어 활용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설문을 설정하였다.

제 2 절 연구 가설

본 연구는 기업의 규모에 따른 조세 지원 제도에 관한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즉 기업의 형태, 주요업종, 수입금액이나 계속기간에 따른 조세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업의 규모를 중심으로 하여 중소기업조세 특례제도, 연구 및 인력개발 조세지원,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 지원, 기업 구조조정과 지역 이전 촉진을 위한 조세 지원제도를 포함한 인지도와 이를 사용 하는 활용도를 중심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 가설 1>은 기업의 규모에 따른 조세지원 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기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나열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 가설 1> 기업 규모에 따라 조세 지원 제도의 인지도가 다를 것이다.

<연구 가설 1-1> 기업의 형태에 따라 조세 지원 제도의 인지도가 다를 것이다. 법인 기업과 개인 기업에 따라 중소기업 조세특례제도,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조세 지원제도,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제도, 기업 구조조정과 지역이전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인지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 가설 1-2> 기업의 주요 업종에 따라 조세 지원 제도의 인지도가 다를 것이다. 생산/제조업, 건설업, 유통서비스업, 기타중소기업에 따라 중소기업 조세특례제도,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조세 지원제도,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제도, 기업 구조조정과 지역이전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인지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 가설 1-3> 기업의 수입금액에 따라 조세 지원 제도의 인지도가 다를 것이다. 기업의 매출액 10억 미만, 30억 미만, 50억 미만, 50억 이상에 따라 중소기업 조세특례제도,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조세 지원제도,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제도, 기업 구조조정과 지역이전 촉진을 위한 조세제원 제도의 인지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 가설 1-4> 기업의 창업연수에 따라 조세 지원 제도의 인지도가 다를 것이다. 기업의 창업연수 1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초과에 따라 중소기업 조세특례제도,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조세 지원제도,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제도, 기업 구조조정과 지역이전 촉진을 위한 조세제원 제도의 인지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 가설 2> 기업 규모에 따라 조세지원 제도의 활용도가 다를 것이다.

<연구 가설 2-1> 기업의 형태(법인 기업, 개인 기업)에 따라 조세 지원 제도의 활용도가 다를 것이다.

<연구 가설 2-2> 기업의 주요업종(생산/제조업, 건설업, 유통서비스업, 그 외)에 따라 조세 지원 제도의 활용도가 다를 것이다.

<연구 가설 2-3> 기업의 수입금액(10억, 50억)에 따라 조세 지원 제도의 활용도가 다를 것이다.

<연구 가설 2-4> 기업의 계속연수(1년, 5년, 10년)에 따라 조세 지원 제도의 활용도가 다를 것이다.

제 3 절 독립변수와 설문지 구성

본 연구를 위하여 독립변수를 인지도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은 설문 문항을 설정하였다. 인지도의 관련된 문항은 크게 4문항으로 하여 세부적인 조세 제도에 관한 설문을 조세특례제도에 관한 6가지 문항, 연구 인력개발에 관한 3가지 문항,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도에 관한 5문항, 그리고 기업구조 조정과 지역 이전촉진을 위한 조세 특례제도에 관한 5가지 문항, 총 19문항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1. 중소기업 조세 특례 제도

[표 3-1] 중소기업 조세특례제도에 관한 설문

설문 문항	
1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2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과세특례 (정보화지원금투자시 손금산입)에 대하여 알고계십니까?
3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 후 소득발생연도부터 4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에 대하여 알고계십니까?
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법인세·소득세 5%~30%공제)에 대하여 알고계십니까?
5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결제금액 세액의 10% 한도)를 알고계십니까?
6	중소기업의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에 대하여 알고계십니까?

[표 3-1]과 같이 중소기업의 조세 특례제도에 관한 신뢰도는 .910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에 관해서는 평균이 3.12, 표준편차가 1.059으로 정보화 지원사업 과세 특례제도에 관해서는 평균이 2.55, 표준편차가 1.059으로 창업 중소기업 세액관면에 관해서는 평균이 3.03, 표준편차 1.167로 특별세액감면제도에 관해서는 평균이 3.06, 표준편차 1.081로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은 위한 세액 공제제도에 관해서는 평균이 2.79, 표준편차가 1.063,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지원 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에 관해서는 평균이 2.74, 표준편차가 1.211로 나타났다.

2. 연구 인력 개발 조세 지원 제도

[표 3-2] 연구 인력 개발 조세 지원 제도에 관한 설문

설문 문항	
1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액의 (과거 4년간 평균 지출액 초과금액의 50% 또는 당해 연도 발생액의 25%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고계십니까?
2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고계십니까?
3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 (기술취득금액의 7%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고계십니까?

[표 3-2]과 같이 연구 인력 개발 조세 지원 제도에 관한 신뢰도는 .908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액에 관한 제도에 대해서는 평균이 2.87, 표준편차 1.176, 연구 및 인력 개발 설비 투자 세액 공제 제도에 관해서는 평균이 2.91, 표준편차가 1.168로 기술이전 소득 과세특례에 관해서는 평균이 2.61, 표준편차가 1.113으로 나타났다.

3. 투자촉진 조세지원 제도

[표 3-3] 투자 촉진 조세 지원 제도에 관한 설문

설문 문항	
1	생산성 향상시절 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고계십니까?
2	환경 ·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고계십니까?
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고계십니까?
4	의약품 품질관리시설 투자세액공제(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고계십니까?
5	임시투자세액공제 (사업용 자산 투자금액의 7%, 수도권 3% 세액 공제)에 대하여 알고계십니까?

[표 3-3]은 투자촉진 조세 지원 제도에 관한 인지도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문 항이다. 신뢰도는 .908로 높게 나타났으며 생산성 향상시절 투자세액공제에 관해서는 평균이 2.74, 표준편차 1.05, 환경,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에 관해서는 평균이 2.85, 표준편차 1.150,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에 관해서는 평균이 2.84, 표준편차 1.194, 의약품 품질관리시설 투자세액공제에 관해서는 평균이 2.71, 표준편차 1.119, 임시투자 세액 공제에 관해서는 평균이 2.97, 표준편 차 1.115로 나타났다.

4. 기업 구조 조정과 지역 이전 촉진을 위한 조세 제도

[표 3-4] 기업구조 조정과 지역이전 촉진을
위한 조세 제도에 관한 설문

설문 문항	
1	중소기업간 통합 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대하여 알고계십니까?
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대하여 알고계십니까?
3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5년간 법인세 · 소득 100% 감면, 2년간 법인세 · 소득세 50%감면)에 대하여 알고계십니까?
4	농공단지 입주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4년간 법인세 · 소득세 50%감면)에 대하여 알고계십니까?
5	법인공장 및 본사의 지방 이전 시 임시특별세액 감면 5년간 법인세 100%감면 2년간 법인세 50%감면)에 대하여 알고계십니까?

[표 3-4]는 기업 구조 조정과 지역 이전 촉진을 위한 조세제도에 관한 인지도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문항이다. 신뢰도는 .935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간 통합 시 양도 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해서는 평균이 2.78, 표준편차 1.193,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해서는 평균이 2.80, 표준편차 1.174,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에 관해서는 평균이 2.96, 표준편차는 1.111, 농공단지 입주 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에 관해서는 평균이 2.87, 표준편차 1.212로 법인공장 및 본사의 지방이전 시 임시특별세액에 관해서는 평균이 2.84, 표준편차는 1.145로 나타났다.

제 4 절 종속 변수와 설문지 구성

본 연구를 위하여 활용도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제도를 얼마나 활용하는지에 관한 4문항으로 설문 조사 하였다.

[표 3-5]는 본 연구를 위한 설문문항이다.

[표 3-5] 조세 제도에 관한 활용도

설문 문항	
1	중소기업 조세특례제도에 대하여 활용하고 계십니까?
2	연구개발을 위한 조세특례제도에 대하여 활용하고 계십니까?
3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하여 활용하고 계십니까?
4	기업구조조정과 지역이전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하여 활용하고 계십니까?

위에서 조사한 독립변수의 활용도의 신뢰도는 .928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 조세특례제도 활용도는 평균이 2.89, 표준편차 1.090, 연구개발을 위한 조세 특례제도 활용도는 평균이 2.54, 표준편차 1.110,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 지원제도 활용도는 평균이 2.81, 표준편차 1.184, 기업구조조정과 지역이전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활용도는 평균이 2.96, 표준편차 1.100으로 나타났다.

제 5 절 설문지의 구성과 신뢰도 분석결과

위의 설문지의 구성내용과 신뢰도를 정리한 결과 다음 [표 3-6]과 같은 결과표를 얻었다

[표 3-6] 설문지의 구성과 신뢰도 분석결과

측정변수		설문지 항목	신뢰계수	
독립 변수	조세 지원 제도 인지도	중소기업 조세특례제도 인지도	문항 q1-1, 1-2, 1-3, 1-4, 1-5, 1-6	.910
		연구인력개발 조세지원제도	문항 q2-1, 2-2, 2-3	.908
		투자촉진 조세지원제도	문항 q3-1, 3-2, 3-3, 3-4, 3-5	.908
		기업구조조정 및 지역이전촉진 조세지원제도	문항 q4-1, 4-2, 4-3, 4-4, 4-5	.935
종속 변수	조세지원제도 활용상황	문항 q5-1, 5-2, 5-3, 5-4,	.928	
인구 통계 학적 특성	기업형태, 주요업종, 매출액, 업력	문항 q6-1, 6-2, 6-3, 6-4	-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인지도와 활용상황 대한 설문지의 구성과 신뢰도 요인을 분석한 결과 요인 3-1 중소기업조세 특례제도의 인지도의 신뢰도는 .910으로 요인 3-2 연구 인력개발조세지원제도 인지도의 신뢰도는 .908로 요인 3-3 투자촉진조세지원제도 인지도의 신뢰도는 .908로 요인 3-4 기업구조조정 및 지역이전 촉진조세지원제도 인지도는 .935로 요인 3-5조세지원제도 활용상황에 대한 인지도는 .928로 나타나 모두 Cronbach's alpha 값이 일반적사회과학의 총 족요건이 .60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 신뢰 할 수 있었으며 분석에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제 6 절 설문 조사 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조사 기업의 일반적인 현황을 측정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각각 설문 항목에 대해서는 신뢰도 분석을 하였으며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는 ANOVA분석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이상의 통계분석은 SPSS 18.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조사기업의 일반적인 현황

본 연구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조사로써 111개의 중소기업을 조사하였다. 조사한 기업의 기업 형태는 개인기업이 44개(39.6%), 법인 기업이 67개(60.4%)가 설문에 참석하였으며, 그중 생산/제조업 업체가 39개(35.1%), 건설 업체가 9개(8.1%), 유통서비스 업체가 30개(27.0%), 그외 기타 업체가 33개(29.7%)로 나타났다.

[표 4-1]은 조사기업의 일반적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4-1] 조사기업의 일반적 현황

구 分		인 도 (명)	비 율
기업 형태	개인사업체	44	39.6%
	법인사업체	67	60.4%
주요 업종	생산/제조업	39	35.1%
	건설업	9	8.1%
	유통서비스업	30	27.0%
	기타중소기업	33	29.7%
매출액	10억 미만	25	22.5%
	10억 ~ 30억 미만	36	32.4%
	30억 ~ 50억 미만	30	27.0%
	50억 이상	20	18.0%
업력	1년 미만	2	1.8%
	1년 ~ 5년 미만	30	27.0%
	5년 ~ 10년 미만	35	31.5%
	10년 이상	44	39.6%
total		111	100.0%

제 2 절 기업의 형태와 인지도와의 관계(연구가설 1-1 검증)

기업의 형태는 개인사업체와 법인 사업체로 나누었다. 111개의 기업체를 조사한 결과 개인사업체 44개와 법인사업체 67개가 설문에 참석하였고 기술통계량은 [표 4-2]와 같다.

[표 4-2] 기업의 형태에 따른 기술통계량

집단통계량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중소기업1	개인사업체	44	15.7955	5.77315	.87034
	법인사업체	67	18.2836	5.15754	.63009
연구개발2	개인사업체	44	7.5455	3.18028	.47944
	법인사업체	67	8.9701	3.07468	.37563
투자촉진3	개인사업체	44	12.4091	5.00380	.75435
	법인사업체	67	14.5970	4.53291	.55378
구조조정4	개인사업체	44	12.9318	4.93868	.74453
	법인사업체	67	15.1493	5.08192	.62085

기업의 형태와 인지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표 4-2]와 같은 분산분석표를 도출하였다.

[표 4-3] 기업의 형태와 인지도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 확률
중소 기업	집단-간	164.418	1	164.418	5.620	.020
	집단-내	3188.771	109	29.255		
	합계	3353.189	110			
연구 개발	집단-간	53.907	1	53.907	5.549	.020
	집단-내	1058.849	109	9.714		
	합계	1112.757	110			
투자 촉진	집단-간	127.136	1	127.136	5.696	.019
	집단-내	2432.756	109	22.319		
	합계	2559.892	110			
구조 조정	집단-간	130.589	1	130.589	5.170	.025
	집단-내	2753.303	109	25.260		
	합계	2883.892	110			

기업의 형태는 크게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으로 나누어 조사한바 기업의 형태에 따라 조세제도의 인지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중소기업, 연구개발, 투자촉진, 구조조정 모든 조세 제도에 관해 유의 확률이 .05이하로 나타나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이 각각의 조세제도인지도가 다른 것으로 확인 되었다.

제 3 절 기업의 주요업종과 인지도와의 관계(연구가설 1-2 검증)

기업의 주요업종은 생산/제조업, 건설업, 유통서비스업, 그 외로 나누었다. 111개의 기업체를 조사한 결과 생산/제조업 39개업체, 건설업 9업체, 유통서비스업 30업체, 그 외 33업체가 설문에 참석하였고 기술통계량은 [표 4-4]와 같다.

[표 4-4] 기업의 주요업종에 따른 기술통계량

기 술 통 계		N	평균값	표준편차	표준오차
중소기업 1	생산/제조업	39	17.3333	5.92645	.94899
	건설업	9	19.1111	5.10990	1.70330
	유통서비스업	30	16.1000	5.48572	1.00155
	기타중소기업	33	17.8485	5.16673	.89941
연구개발 2	생산/제조업	39	8.3333	3.31927	.53151
	건설업	9	8.2222	3.80058	1.26686
	유통서비스업	30	7.8667	3.19194	.58277
	기타중소기업	33	9.0303	2.85575	.49712
투자촉진 3	생산/제조업	39	14.2308	5.04955	.80858
	건설업	9	13.6667	4.47214	1.49071
	유통서비스업	30	13.3000	5.38292	.98278
	기타중소기업	33	13.5455	4.23594	.73738
구조조정 4	생산/제조업	39	14.7692	5.12199	.82018
	건설업	9	15.6667	5.38516	1.79505
	유통서비스업	30	13.2333	5.58127	1.01900
	기타중소기업	33	14.2424	4.65047	.80954

기업의 주요업종과 인지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표 4-5]와 같은 분산분석표를 도출하였다.

[표 4-5] 기업의 주요업종과 인지도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 확률
중소 기업1	집단-간	82.691	3	27.564	.902	.443
	집단-내	3270.498	107	30.565		
	합계	3353.189	110			
연구 개발2	집단-간	22.098	3	7.366	.723	.541
	집단-내	1090.659	107	10.193		
	합계	1112.757	110			
투자 촉진3	집단-간	16.487	3	5.496	.231	.874
	집단-내	2543.405	107	23.770		
	합계	2559.892	110			
구조 조정4	집단-간	59.542	3	19.847	.752	.524
	집단-내	2824.350	107	26.396		
	합계	2883.892	110			

기업의 주요업종에 따라 생산/제조업, 건설업, 유통서비스업, 그 외 기타업으로 나눈바 조세제도의 인지도는 기업의 업종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연구개발, 투자촉지, 구조조정 모든 조세 제도에 관해 유의 확률이 .05이상으로 나타나 주요업종에 따라 각각의 조세제도인지도가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제 4 절 기업의 매출액과 인지도와의 관계(연구가설 1-3 검증)

기업의 주요매출액은 10억, 30억, 50억을 기준으로 나누었다. 111개의 기업체를 조사한 결과 10억 미만 업체 25업체, 10억에서 30억 업체 36업체, 30억에서 50억 업체 30업체, 50억 이상인 20업체가 설문에 참석하였고 기술통계량은 [표 4-6]와 같다.

[표 4-6] 기업의 수입금액에 따른 기술통계량

기술통계		N	평균값	표준편차	표준오차
중소기업1	10억 미만	25	14.6000	5.10718	1.02144
	10억 ~ 30억 미만	36	16.5556	6.08250	1.01375
	30억 ~ 50억 미만	30	19.1000	4.46712	.81558
	50억 이상	20	19.3000	4.99579	1.11709
연구개발2	10억 미만	25	7.1200	2.92005	.58401
	10억 ~ 30억 미만	36	7.9722	3.57360	.59560
	30억 ~ 50억 미만	30	8.8333	2.39372	.43703
	50억 이상	20	10.1500	3.08263	.68930
투자촉진3	10억 미만	25	11.2400	4.68402	.93680
	10억 ~ 30억 미만	36	12.8611	5.03220	.83870
	30억 ~ 50억 미만	30	15.5333	3.80320	.69437
	50억 이상	20	15.7000	4.41409	.98702
구조조정4	10억 미만	25	11.7200	4.25754	.85151
	10억 ~ 30억 미만	36	13.2778	5.77982	.96330
	30억 ~ 50억 미만	30	16.0333	3.48873	.63695
	50억 이상	20	16.6000	5.26558	1.17742

기업의 매출액과 인지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표 4-7]와 같은 분산분석표를 도출하였다.

[표 4-7] 기업의 수입금액과 인지도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 확률
중 소 기업1	집단-간	379.400	3	126.467	4.550	.005
	집단-내	2973.789	107	27.792		
	합계	3353.189	110			
연구 개발2	집단-간	114.428	3	38.143	4.088	.009
	집단-내	998.329	107	9.330		
	합계	1112.757	110			
투자 촉진3	집단-간	357.360	3	119.120	5.787	.001
	집단-내	2202.532	107	20.584		
	합계	2559.892	110			
구조 조정4	집단-간	399.863	3	133.288	5.741	.001
	집단-내	2484.029	107	23.215		
	합계	2883.892	110			

기업의 매출액은 10억, 50억을 기준으로 나누어 조사한바 기업의 매출액에 따라 조세제도의 인지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중소기업, 연구개발, 투자촉진, 구조조정 모든 조세 제도에 관해 유의 확률이 .05이하로 나타나 매출액에 따라 각각의 조세제도인지도가 다른 것으로 확인 되었다.

제 5 절 기업의 계속연수와 인지도와의 관계(연구가설 1-4 검증)

기업의 계속연수는 1년, 5년 10년 억을 기준으로 나누었다. 111개의 기업체를 조사한 결과 1년 미만 2업체, 5년 미만 30업체, 10년 미만 35업체, 10년 이상 44업체 설문에 참석하였고 기술통계량은 [표 4-8]와 같다.

[표 4-8] 기업의 계속연수에 따른 기술통계량

기술통계		N	평균값	표준편차	표준오차
중소기업1	1년 미만	2	10.5000	2.12132	1.50000
	1년 ~ 5년 미만	30	15.2000	6.04808	1.10422
	5년 ~ 10년 미만	35	18.8286	4.86576	.82246
	10년 이상	44	17.8182	5.20408	.78454
연구개발2	1년 미만	2	6.0000	.00000	.00000
	1년 ~ 5년 미만	30	7.2667	3.00498	.54863
	5년 ~ 10년 미만	35	8.9143	3.09051	.52239
	10년 이상	44	8.8864	3.25802	.49116
투자촉진3	1년 미만	2	10.5000	.70711	.50000
	1년 ~ 5년 미만	30	12.6333	5.16943	.94380
	5년 ~ 10년 미만	35	14.4286	4.62910	.78246
	10년 이상	44	14.0682	4.76615	.71852
구조조정4	1년 미만	2	11.5000	2.12132	1.50000
	1년 ~ 5년 미만	30	12.7333	5.25838	.96004
	5년 ~ 10년 미만	35	15.0000	4.78355	.80857
	10년 이상	44	14.8636	5.23668	.78946

기업의 계속연수와 인지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표 4-9]와 같은 분산분석표를 도출하였다.

[표 4-9] 기업의 계속연수와 인지도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 확률
중 소 기업1	집단-간	318.372	3	106.124	3.742	.013
	집단-내	3034.817	107	28.363		
	합계	3353.189	110			
연구 개발2	집단-간	69.715	3	23.238	2.384	.073
	집단-내	1043.041	107	9.748		
	합계	1112.757	110			
투자 촉진3	집단-간	79.058	3	26.353	1.137	.338
	집단-내	2480.834	107	23.185		
	합계	2559.892	110			
구조 조정4	집단-간	120.343	3	40.114	1.553	.205
	집단-내	2763.548	107	25.828		
	합계	2883.892	110			

기업의 근속연수는 1년, 5년, 10년을 기준으로 나누어 조사한바 기업의 근속연수에 따라 조세제도 각각의 인지도가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관한 조세제도에 관해서는 유의 확률이 .05이하로 근속연수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개발, 투자촉진, 구조조정에 관한 조세제도에 관해서는 유의확률이 .05이상으로 나타나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지 않을 것으로 확인하였다.

제 6 절 기업의 규모와 활용도와의 관계(연구가설 2 검증)

1. 기업의 형태와 활용도와의 관계(연구가설 2-1 검증)

기업의 형태는 개인사업체와 법인 사업체로 나누었다. 111개의 기업체를 조사한 결과 개인사업체 44개와 법인사업체 67개가 설문에 참석하였고 기술통계량은 [표 4-10]와 같다.

[표 4-10] 기업의 형태에 따른 기술 통계량 - 활용도

집단통계량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활용상황	개인사업체	44	9.7045	4.06677	.61309
	법인사업체	67	11.5522	3.93232	.48041

기업의 형태와 활용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표 4-6]와 같은 분산분석표를 도출하였다.

[표 4-11] 기업의 형태와 활용도와의 관계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90.670	1	90.670	5.707	.019
집단-내	1731.726	109	15.887		
합계	1822.396	110			

기업의 형태에 따른 조세제도의 활용정도를 확인한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확률이 .05이하 이므로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에 따라 조세제도 활용도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기업의 주요업종과 활용도와의 관계(연구가설 2-2 검증)

기업의 주요업종은 생산/제조업, 건설업, 유통서비스업, 그 외로 나누었다. 111개의 기업체를 조사한 결과 생산/제조업 39개 업체, 건설업 9업체, 유통서비스업 30업체, 그 외 33업체가 설문에 참석하였고 기술통계량은 [표 4-12]와 같다.

[표 4-10] 기업의 주요업종에 따른 기술 통계량 - 활용도

기술통계		N	평균값	표준변차	표준오차
활용상황	생산/제조업	39	11.5897	4.17838	.66908
	건설업	9	10.1111	3.91933	1.30644
	유통서비스업	30	10.2000	4.26210	.77815
	기타중소기업	33	10.6667	3.82971	.66667

기업의 형태와 활용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표 4-11]와 같은 분산분석표를 도출하였다.

[표 4-11] 기업의 형태와 활용도와의 관계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39.938	3	13.313	.799	.497
집단-내	1782.458	107	16.658		
합계	1822.396	110			

기업의 형태에 따른 조세제도의 활용정도를 확인한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확률이 .05이상 이므로 생산/제조업, 건설업, 유통서비스업에 따라 조세제도 활용도가 다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기업의 수입금액과 활용도와의 관계(연구가설 2-3 검증)

기업의 주요수입금액은 10억, 30억, 50억을 기준으로 나누었다. 111개의 기업체를 조사한 결과 10억미만 업체 25업체, 10억에서 30억 업체 36업체, 30억에서 50억 업체 30업체, 50억 이상인 20업체가 설문에 참석하였고 기술통계량은 [표 4-12]와 같다.

[표 4-12] 기업의 수입금액에 따른 기술 통계량 - 활용도

기 술 통 계		N	평균값	표준편차	표준오차
활용상황	10억 미만	25	8.8800	4.09593	.81919
	10억 ~ 30억 미만	36	10.0556	4.32233	.72039
	30억 ~ 50억 미만	30	12.4333	2.47307	.45152
	50억 이상	20	12.2000	4.33590	.96954

기업의 매출액과 활용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표 4-13]와 같은 분산분석표를 도출하였다.

[표 4-13] 기업의 수입금액과 활용도와의 관계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231.301	3	77.100	5.185	.002
집단-내	1591.096	107	14.870		
합계	1822.396	110			

기업의 수입금액에 따른 조세제도의 활용정도를 확인한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확률이 .05이하 이므로 수입금액에 따라 조세제도 활용도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4. 기업의 계속연수와 활용도와의 관계(연구가설 2-4 검증)

기업의 계속연수는 1년, 5년 10년 억을 기준으로 나누었다. 111개의 기업체를 조사한 결과 1년 미만 2업체, 5년 미만 30업체, 10년 미만 35업체, 10년 이상 44업체 설문에 참석하였고 기술통계량은 [표 4-14]와 같다.

[표 4-14] 기업의 계속연수에 따른 기술 통계량 - 활용도

기 술 통 계		N	평균값	표준편차	표준오차
활용상황	1년 미만	2	7.0000	4.24264	3.00000
	1년 ~ 5년 미만	30	9.9000	4.15518	.75863
	5년 ~ 10년 미만	35	11.6000	3.66381	.61930
	10년 이상	44	11.0000	4.23166	.63795

기업의 계속연수와 활용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표 4-15]와 같은 분산분석표를 도출하였다.

[표 4-15] 기업의 계속연수와 활용도와의 관계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77.296	3	25.765	1.580	.199
집단-내	1745.100	107	16.309		
합계	1822.396	110			

기업의 계속연수에 따른 조세제도의 활용정도를 확인한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확률이 .05이상 이므로 기업의 근속연수에 따라 조세제도 활용도가 다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 7 절 분석 검증 결과

[표 4-16] 연구가설 검증 결과

구분	연 구 가 설	검증결과	
가설 1	기업 규모에 따라 조세 지원제도의 인지도가 다르다.	채택	
1-1	기업의 형태(개인/법인)에 따라 조세지원제도의 인지도가 다르다.	중소기업조세특례제도	채택
		연구인력개발조세지원	채택
		투자촉진조세지원	채택
		기업구조조정촉진	채택
1-2	기업의 주요업종에 따라 조세지원 제도의 인지도가 다르다.	중소기업조세특례제도	기각
		연구인력개발조세지원	기각
		투자촉진조세지원	기각
		기업구조조정촉진	기각
1-3	기업의 매출액에 따라 조세지원 제도의 인지도가 다르다.	중소기업조세특례제도	채택
		연구인력개발조세지원	채택
		투자촉진조세지원	채택
		기업구조조정촉진	채택
1-4	기업의 근속연수에 따라 조세지원 제도의 인지도가 다르다.	중소기업조세특례제도	채택
		연구인력개발조세지원	기각
		투자촉진조세지원	기각
		기업구조조정촉진	기각
가설 2	기업 규모에 따라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가 다르다.	채택	
2-1	기업의 형태(개인/법인)에 따라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가 다르다.	채택	
		기각	
		채택	
		기각	

[표 4-16]은 위의 연구 결과를 정리 한 것이다.

연구 가설 1인 규모에 따른 인지도의 관계는 <연구 가설 1-1>과 <연구 가설 1-3>은 모두 채택하며 기업의 형태, 기업의 수입금액에 따른 인지도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고, <연구 가설 1-2>는 기각하며 기업의 주요업종에 따라 인지도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 가설 1-3>인 기업의 수입금액에 따라서는 각각의 조세제도에 따라 조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관한 특례 조세 제도에 관해서는 인지도가 다르게 나타났지만 그 외에는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 2인 규모에 따른 활용도의 관계는 기업의 형태와 수입금액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업종과 계속연수에 관해서는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중소기업조세 지원제도가 기업의 형태, 기업의 주요업종, 기업의 수입금액 기업의 계속 연수에 따라 그 인지도와 활용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가설 1에서는 규모에 따른 인지도 계는 기업의 형태와 기업의 수입금액에 따른 인지도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의 주요 업종과 기업의 계속 연수에 따른 인지도는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구가설 2에서는 규모에 따른 활용도 관계도 기업의 형태와 기업의 수입금액에 따른 활용도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고, 주요업종과 계속 연수에 관해서는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업의 형태와 수입금액에 따른 인지도와 활용도가 다르므로 법인보다 개인, 중기업보다 소기업들이 조세지원제도를 더 많이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첫째 조세지원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감면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둘째 조세지원제도가 복잡하고 다양하여 소기업, 개인 등이 이해하고 활용하기가 어려우므로 조세지원 제도를 좀 더 단순화 하고 간편해야 한다.

셋째 세법의 빈번한 개정 등으로 조세지원제도의 내용 적용방법과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여 그 활용이 부진하므로 개인, 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홍보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방향

이상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정리해 보았다

첫째 표본선정과 자료수집의 한계이다. 표본선정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중소기업 11개를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이 대상이 우리나라 기업을 대표한

다고 할 수 없다.

둘째 연구 방법론상 문제로 설문조사를 통한 조세지원제도의 인지도와 활용도를 조사하였으나 토론 인터뷰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셋째 기업규모와 조세지원제도의 인지도 활용도에 대한 연구에서 두 변수의 상관관계와 조세지원제도의 복잡성 등이 인지도와 활용도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하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이를 보완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IBM(2007) 「IBM한국보고서」 한국경제신문
- 김동수(2003) 「중소기업지원제도에 관한연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 김선주(2005)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경희대학교석사논문
- 김성진(2006) 「한국의 중소기업」 매일경제신문사 PP 61-65
- 김성태(2003)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 김용기(2003)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의 연구」 군산대학교 석사논문
- 김은영(2005) 「우리나라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강원도
영서지방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석사논문
- 김진훈(2008)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건국대학교 석사 논문
- 나도성(2008) 「9988-234」 미래경영개발연구원
- 박현주(2008) 「중소기업 조세지원정책의 인지도 측정및 제도 개선방향 연구」
경원대학교 석사논문
- 삼일회계법인(2011) 「삼일총서, 조세특례제한법」
- 이동호(2006)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장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석사논문
- 이성호(2005)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 논문
- 이은하(2004)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실증적연구」
청주대학교 박사논문

- 이재규(2007) 「현행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선호도 분석」
인하대학교 박사논문
- 임성균(2010)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순기능적 역할에 대한연구」
경원대학교 박사논문
- 정순희(2008)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실태에 관한연구」
한밭대학교 석사논문
- 정재영(2003)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박사논문
- 중소기업중앙회(2010) 「중소기업위상지표」
- 중소기업청(2008)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
- 중소기업청(2010) 「중소기업시책」
- 중소기업청(2011) 「중소기업시책」
- 중소기업청(2012) 「중소기업시책」
- 한국세무사회(2011) 「조세법전」 PP 367-1103」



【부 록】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시어 본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귀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 & 컨설팅 대학원 매니지먼트 컨설팅학과에 재학 중인 세무사 홍웅선입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조세감면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상황에 관한 연구로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귀하가 응답해주신 설문의 결과는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을 위한 통계 분석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응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계분석에 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9월

한성대지식컨설팅대학원

매니지먼트컨설팅학과

연구자 석사과정 홍웅선

서울 영등포 당산2가 면지성지빌딩 202호

T e l : 02-2636-8631

011-4038-2802

F A X : 02-2637-0028

e-mail: hws2198@hanmail.net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인지도 활용상황에 대한 설문

1. 다음은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인지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문항에 V표를 해주십시오.

	(1) 전혀 모른다	(2) 모른다	(3) 보통이다	(4) 조금한다	(5) 아주 잘한다
(1) 중소기업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고계십니까?	()	()	()	()	()
2)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과세특례 (정보화지원금투자시 손금신입)에 대하여 알고계십니까?	()	()	()	()	()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후 소득발생연도부터 4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에 대하여 알고계십니까?	()	()	()	()	()
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법인세·소득세 5%~30%공제)에 대하여 알고계십니까?	()	()	()	()	()
5)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결제금액 세액의 10% 한도)를 알고계십니까?	()	()	()	()	()
6) 중소기업의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신입에 대하여 알고계십니까?	()	()	()	()	()

	(1) 전혀 모른다	(2) 모른다	(3) 보통이다	(4) 조금한다	(5) 아주 잘한다
(2)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액의 (과거 4년간 평균 지출액의 50% 또는 당해 연도 발생액의 25%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고계십니까?	()	()	()	()	()
2)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고계십니까?	()	()	()	()	()
3)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 (기술취득금액의 7%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고계십니까?	()	()	()	()	()

(3)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1) 전혀 모를 다	(2) 모를 다	(3) 보통 이다	(4) 조금 안다	(5) 아주 잘 안다
1) 생활성 향상시절 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고계십니까?	()	()	()	()	()
2) 환경·인천설비 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고계십니까?	()	()	()	()	()
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고계십니까?	()	()	()	()	()
4) 의약품 품질관리시설 투자세액공제(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고계십니까?	()	()	()	()	()
5) 임시투자세액공제 (사업용 자산 투자금액의 7%, 수도권 3%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고계십니까?	()	()	()	()	()

(4) 기업구조 조정과 지역 이전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전혀 모를 다	(2) 모를 다	(3) 보통 이다	(4) 조금 안다	(5) 아주 잘 안다
1)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대하여 알고계십니까?	()	()	()	()	()
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대하여 알고계십니까?	()	()	()	()	()
3)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2년간 법인세·소득세 50%감면)에 대하여 알고계십니까?	()	()	()	()	()
4)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에 대한 세액감면 (4년간 법인세·소득세 50%감면)에 대하여 알고계십니까?	()	()	()	()	()
5) 법인공장 및 본사의 지방이전시 임시특별세액 감면 5년간 법인세 100%감면 2년간 법인세 50%감면)에 대하여 알고계십니까?	()	()	()	()	()

<p>2. 다음은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p>	(1)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 (2) 별로 활용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조금 활용한다 (5) 적극 활용한다		
<p>(1) 중소기업 조세특례제도에 대하여 활용하고 계십니까?</p>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2) 연구개발을 위한 조세특례제도에 대하여 활용하고 계십니까?</p>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3)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하여 활용하고 계십니까?</p>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4) 기업구조조정과 지역이전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하여 활용하고 계십니까?</p>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3. 다음은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p>			
<p>(1) 귀사의 기업 형태는?</p>			
1) 개인	2) 법인		
<p>(2) 귀사의 주요업종은?</p>			
1) 생산/제조업	2) 건설업	3) 유통서비스업	4) 기타중소기업
<p>(3) 귀사의 수입금액 (매출액)은?</p>			
1) 10억 미만	2) 10억~30억미만	3) 30억~50억미만	4) 50억이상
<p>(3) 귀사가 창업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p>			
1) 1년미만	2) 1년~5년	3) 5년~10년	4) 10년초과

ABSTRACT

Tax Incentives for SMEs
Research on awareness and utilization

Hans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Knowledge
Services & Consulting
Department of Knowledge Services & Consulting
Major consulting manager
Woong Sun ,Hong

Korea's Small Business number Total 3,040,000 The occupancy ratio of 99.9% and workers number 11,500 one thousand people in total personnel number of 88% occupancy and medium-sized enterprise production process and management system innovation in the vulnerability of industrial structure on the side of the range and globalization the castle of the unfair competition and lack of market performance in the micro-structural constraints, lack of entrepreneurship, etc. Free basic strength is weak.

However, SMEs in the country's national economy is the driving force of sustainabl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efficient allocation of income and employment of jobless growth era is responsible for its role as the protagonist. SMEs entrepreneurs mental proliferation establishment to facilitate convenient doing business that companies create an environment to the industry structure life and revitalize New Industry Creation and technical capacity building and SME's constitution to improve the viable and competitiv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development country to supply the technology and manpower, R & D, etc. to provide direct support to expand investment and protect small businesses through tax support is nurturing.

The current small business tax support scheme, SME special research workforce development exemption, investment promotion exemption, supported employment for the exemption, corporate

restructuring for the exemption, other tax supported my emergency lighting, and feature-rich, and then, more complex, as well as support limited and subject to frequent lack of understanding of tax law revisions and it is Free poorly utilized.

This study supports the corporate tax system based on a scale to determine the relevance of the type of company, company's major industries company's number of years, depending on the amount of income tax of enterprises continue to support programs and corporate awareness of the impact on the shape of the company's major Industry sales of businesses, corporate tax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utilization of support systems for the hypothesis that the impact was analyzed by setting

Analysis of companies and enterprises in the form of Income Tax Incentives awareness of the impact on businesses in the form of addition gave the amount of income tax and corporate awareness of the impact on support systems gave a number of enterprises also form and amount of corporate tax Incentives also gave awareness of the impact on businesses and corporations in the form of amount of income tax has an impact on the utilization of support systems have been validated according gyumche corporate tax support awareness and utilization of the system was tested differently.

Therefore, SME support system companies in the form of corporate income depending on the amount of its recognition and utilization of the different types of tax support system of the reduction target and the reduction of the width of the larger improvements and SME Support Tax tax support effects that can be represented by tax cuts and awareness training to improve the utilization of public relations that you need to see strengthened.